



# 산학협력단

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## 제 목 산학협력 알리미 안내(2024-2호): 비전임 교원 임용 요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

1. 관련: 교원인사팀-962호(2024.03.28., “비전임교원 및 강사 임용 요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” )
2. 위와 관련하여, 비전임 교원의 임용 요청 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소속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가. 비전임 교원 임용 요청 관련 유의사항

- 1) 비전임 교원(명예, 석좌, 대우, 겸임, 초빙, 객원, 연구교수 등) 임용 요청 시 희망 임용일자(입면 등) 15일 전(근무일 기준)까지 교원인사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미준수 시 희망일자에 임용 불가
- 2)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교·강사 인사 발령일자 소급 적용 불가

### 나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1) 「사립학교법」 제54조제1항 -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2) 「사립학교법」 제74조제4항 -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3) 「교원인사규정」 제9조 - 교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지 못한다.

붙임 산학협력단 알리미(2024-2호) 1부. 끝.

## 산학협력단장

수신자 원, 대, 연, 산학협력단장(산학협력팀)

직원	팀장	단장
임다혜	오서윤	04/01 송윤재

협조자

수 신

시행 산학협력팀-635 ( 2024.04.01 ) 접수 ( )

우 131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/ <https://www.gachon.ac.kr>

전화 031-750-6978 전송 (031)750-5114 / [dahye20@gachon.ac.kr](mailto:dahye20@gachon.ac.kr) / 공개